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6호 2008. 8. 20 (수)

【규 칙】

- 정선군규칙 제1132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1
- 정선군규칙 제1133호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5
- 정선군규칙 제1134호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규칙 11
- 정선군규칙 제1135호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21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08-73호 농어촌도로기본계획(변경)의 고시 30
- 정선군고시 제2008-7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31
- 정선군고시 제2008-79호 하천 점용·사용 허가고시 45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08-463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46
- 정선군공고 제2008-464호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47
- 정선군공고 제2008-466호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53
- 정선군공고 제2008-470호 2009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정제안 모집 공고 55
- 정선군공고 제2008-471호 도로정비사업시행허가에관한공고 59
- 정선군공고 제2008-472호 정선 군기본계획 승인 사항 열람공고 60
- 정선군공고 제2008-476호 취득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61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공고 제2008-1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 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신청 공고 66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8. 8 . 18.

정선군규칙 제1132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액)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 매월 3만원
2. 사망위로금 : 15만원

제3조(신청시기 및 서식)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공로수당 신청은 연중 신청가능하며,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사망위로금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지급시기) 제3조제1항에 따른 참전공로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월부터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참전공로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대상자 관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명단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지급대상자의 전출 및 사망 발생 즉시 읍·면장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참 전 유공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 일자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제적등본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신청인의 통장사본											

제 정 이 유

-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관련업무 추진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금액의 구체적 명시(제2조)
 -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 매월 3만원
 - 사망위로금 : 15만원
- 참전 유공자 공로수당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이에 따른 세부 신청서식을 정함(제3조)
-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정기 신청자 외에 연중신청자에 대한 지급시기를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달부터 지급토록 함(제4조)
-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지급대상자의 전출 및 사망 시 읍·면장이 군수에게 보고토록 함(제5조)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8. 8 . 18.

정선군규칙 제1133호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의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법 제9조제2항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써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중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 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지정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금고지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채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군이 강원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5.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금고는 회계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회계별, 기금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5조(금고 지정기준) 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군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수준
 3. 주민 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군과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고 배점부여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지정 적격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정선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만이 소재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금고 지정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민간전문가
2.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때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및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등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군금고 업무담당자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2.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8조(금고 지정절차) ① 군수는 금고지정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군보와 게시판 및 정선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재 하여야 한다.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평가기준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사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계약 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지정 공표와 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재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액정해지, 약정조문 해석, 유효기간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금고의 중도해지) ① 군수는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해지 통지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중도해지 후 금고를 재지정할 때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기한은 예외로 한다.

제11조(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등을 매 반기 또는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재무건전성 등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이 정하는 것 외에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한까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 표】

금고지정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소 계	3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 평가기관 (6점) - 국내 평가기관 (4점)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자기자본비율(안정성,7점) - 무수익여신비율 (건전성,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6점) - 대손충당금 적립율(안정성,5점)	(25)	
	소 계	15	
2. 군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수준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소 계	20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5)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라. 각종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5)	
	소 계	20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등 전산처리능력	(5)	
	라. 금고업무수행조직 및 OCR센터 운영능력	(5)	
	소 계	10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가.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계획	(5)	
	나. 군과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	

제 정 이 유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규칙으로 제정·운영함으로써
- 우리군 공금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세출금의 지급 등 효율적인 공금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규칙의 적용범위 규정 (제3조)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하되,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지정금융기관은 제외
- 금고지정 방법 규정 (제4조제1항)
 -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하되,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를 열거하여 규정함
- 금고의 수 규정 (제4조 제2항)
 - 한개의 금고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 지정 가능
- 약정기간 규정 (제4조 제3항)
 - 4년을 원칙으로 함
- 금고지정기준 규정 (제5조)
 - 금융기관의 신용도등 5개 항목
 -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등 15개 세항목
 - BIS자기자본비율등 6개 세세항목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사항 규정 (제6조)
- 지정절차등에 관한 사항 규정 (제8조 내지 제10조)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8. 8 . 18.

정선군규칙 제1134호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호중 “1억원”을 “3억원”으로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군수가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연간 도급가액 100억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제5호 서식】

지 방 세 서 면 조 사 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현장 재증)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성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 제출일자 : 년 월 일	법인유형 제 조 업 () 건 설 업 () 판 매 업 () 운 송 업 () 기 타 ()	주요목적사업
--	--	---------------

정 선 군 수 귀 하

① (297mm²×210mm²)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 작성 [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년도별(3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시 정선군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후 보낼 곳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정선군청 재무과
우편번호 : 233-800

※ 문의사항 전화 : (033) 560-2282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 법인소유자산(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서식목차

1.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2.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
3. 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

1.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년도		사업장	강원도 시·군 읍면·동 번지 호						사업장명		
구 분 월 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 산 출 주민세	기납부 세 액	납부일자
	근 로	퇴 직	배 당	이 자	사 업	법인세법 제98조	기 타	한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정 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은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 서식 2.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강원도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장면적 330㎡이하의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1㎡이상은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2.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강원도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사업장명	소재지	사 업 개시일	연면적 (a)	①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c(a-b)	②정당 세액 (d)	기납부 세 액 ② (e)	납부 일자	차인세액 f(d-e)
				기숙사	구내식당	기타	소 계 (b)					

3. 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강원도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구분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계
① 근로소득	급여														
	상여														
	②소계														
② 비과세소득	연장														
	차량														
	③소계														
③ 종업원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④=(②-③)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④×(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 서식 3. 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강원도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용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수로 산정
- ④ 산출세액 : ③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개 정 이 유

- 직접 세무조사 대상법인 축소 및 『경제살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영세·성실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 기업의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직접 세무조사 대상법인 축소 (제9조의2)
 - ※ 1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 3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규정 신설 (제9조의3)
 - ※ 부동산 취득가액 3억원 미만 및 우수 중소기업
- 별지 제5호서식(서면조사서) 간소화
 - 법인현황 (삭제)
 - 법인소유 자산관련 증감명세서 (삭제)
 -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존치)
 -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 (존치)
 - 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 (존치)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8. 8 . 18.

정선군규칙 제1135호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신청서류 등) ① 정선군 임대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를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1. 입주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2. 무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의한 입주자 선정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입주자 선정)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입주자를 선정 하고자 할 때에는늦어도 입주 신청서 접수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고 군민들이 주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공고 하고자 할 때에는 1주일 이상 군청, 읍·면사무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1. 아파트의 소재지, 동별 및 호수
2. 입주 부담금
3. 기타 아파트 임대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입주 신청자가 임대 예정 호수를 초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정 한다.

1. 광산 근로자 재직경력 세대주
2. 무주택 세대주

③ 제2항의 순위에서 경합 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결정한다.

1. 광산 근로자로 재직한 경력이 오래된 자
2. 국가 유공자 (보훈처 증명)
3. 부모 봉양자
4. 기타 군수가 입주자 타당 하다고 인정 되는 자

제4조(입주계약) ①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내에 입주보증금을 예탁하고 정선군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별표1에 의거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정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제3조에 의한 순위자를 선정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임대료 징수) 임대료는 군수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입주신청대기순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발급번호 :

입 주 신 청 서

본인은 정선군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주택명 : 정선군 () 임대아파트

2.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연락처	
현거주형태			

3. 입주구분 : 1층(), 2,3층(), 4층(), 5층()

4. 첨부서류 : 무주택 증명 1통

위와 같이 입주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 선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입 주 자 선 정 통 지 서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계약체결일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장소				

귀하께서는 정선군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 통보 하오니 지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주보증금 납입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시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 하겠습니다.

(계약시 준비사항)

1. 임대보증금 납부 영수증
2. 손해보험 계약증서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첨부 :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임대아파트계약해지신청서

동·호수	동 호			
입 주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주연월일	년	월	일	퇴거예정일 년 월 일
해지사유				
퇴 거 지				

위와 같이 정선군 임대아파트의 입주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 선 군 수 귀하

※ 본 신청서는 퇴거예정 30일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납입통지서 (군청 보관용)		수납의뢰서 (수납 은행용)		납입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아파트 동 호 20 년 월분		아파트 동 호 20 년 월분		아파트 동 호 20 년 월분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임 대 료	원	임 대 료	원	임 대 료	원
관 리 비	원	관 리 비	원	관 리 비	원
공 동 전 기 료	원	공 동 전 기 료	원	공 동 전 기 료	원
정 화 조 청 소	원	정 화 조 청 소	원	정 화 조 청 소	원
물 탱 크 청 소	원	물 탱 크 청 소	원	물 탱 크 청 소	원
합 계 (납기내)	원	합 계 (납기내)	원	합 계 (납기내)	원
연체료 (10%)	원	연체료 (10%)	원	연체료 (10%)	원
미 납 금 액	원	미 납 금 액	원	미 납 금 액	원
합계 (납기후)	원	합계 (납기후)	원	합계 (납기후)	원
납부기한 : 20 년 월 일		납부기한 : 20 년 월 일		납부기한 : 20 년 월 일	
위 금액이 입금 되었기에 통보합니다		위 금액을 귀은행(지점)에서 수 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수납 인		수납 인		수납 인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 영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 영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 영	
특별회계 징수관 귀하		특별회계 징수관 귀하		특별회계 징수관 귀하	
취급 인		취급 인		취급 인	

[별표 1]

정선군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주택의 표시)

☐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읍.면 리 번지☐ 건물의 표시

건 물 명	동	호	면 적(m ²)	비 고

위의 표시 주택을 임대차 함에 있어 정선군수를 "갑"(이하 "갑"이라 한다.)으로 하고, 임차인을 "을"(이하 "을"이라 한다.)로 조정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월 임대료) "갑"은 제2조 이하의 각항에 의하여 표시한 "갑"소유의 주택을 월 원으로 임대한다.

제2조(임대기간) 임대차기간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으로 한다. 단, 계약만료일 1월전까지 "을"이 임대기간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갑"은 쌍방의 이의가 없을때에 이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임대금액에 대하여는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임대보증금) ①"을" 은 본계약 체결전 원을 입주보증금으로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입주부담금에 명시된 금액을 납부한다.)

②제1항의 입주보증금은 무이자로 "을"이 "갑"에게 예치 하며, 계약 해지후"을" 이 임대차 물건을 명도한 때에 "갑"은 이를 원금 환불하여야 한다.

③임대료 체납금 및 공과금등의 체납금이 있을때는 "갑"은 "을"의 승인없이도 임대보증금에서 "을"의 채무를 변제 충당 한다.

제4조(입주기간)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입주 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 계산) ①"을"은 매월말까지 당월분의 임대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 경과시는 그달 임대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입주 및 퇴거시의 임대료는 일할계산 하여 납부한다.

③"을"이 임대료를 2개월이상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6조(임대료등의 변경) "갑"은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공공요금) "을"은 임대료 이외에 주택의 공공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폐기물 수거 수수료 및 분뇨수거 수수료등 청소, 위생과 유지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경비, 수선, 기타 보존상 필요한 경비를 공동 부담 한다.

제8조(수선부담) "을"(그의 가족 및 동거인과 방문자중 포함)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건물 또는 임대차 물건의 파손, 고장 그외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는 "을"은 지체 없이 원상복구 및 수선을 하여야 한다.

제9조(해약조건) ①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갑"은 최고하지 않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주거 이외의 목적 사용
2. 전부 또는 일부 무단 전대 혹은 임주권리의 양도
3. 임대료의 2개월이상 체납
4. 구조물의 무단변조, 증설 또는 원형변경
5. "을"의 동거가족 또는 동거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그외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인정할 때
6. "을"이 무단 퇴거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갑"이 본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퇴거 하고 "갑"에게 명도 하여야 하며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해약)①"갑", "을"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해약코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9조에 따라 계약해제후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을시에는 계약해제일 익일부터 가산하여 퇴거일까지 임대료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금으로 "갑"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제11조(원상회복) "을"이 퇴거할 시에는 입주시의 상태로 (시설 및 비품)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 회복을 하지 않을시는 입주보증금에서 "을"의 동의 없이 변제할 수 있다.

제12조(연고권등) "을"은 위 표시계약 기간내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는 이외의 연고권등 어떠한 권리의 주장도 할 수 없으며 "을"은 임차한 주택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용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유치권도 행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소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으로 하고 소송은 최고 없이 "갑"이 제소할 수 있다.

제14조(입주준수사항) "을"은 임대아파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 변경 또는 훼손할 수 없다.
2. 입주권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임차할 수 없다.
3. 임차권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할 수 없다.

5. 기타 공동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하며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①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것과 본 계약해석에 "갑" "을"간에 이의가 있을시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본 계약이 체결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날인 하고 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정 선 군 수

"을" - 주 소 : 정선군 읍면 리 반 번지
성 명 : (인감인)

개 정 이 유

- 고한, 사북 지역의 광산 업체가 폐광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 정선군 임대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제명개정

- 정선군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으로 함.

○ 「광산근로자」 관련 조문등 삭제 (제1조, 제2조, 제4조)

-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를 정선군 임대아파트로 하고,
- 재직증명서(별지 제2호서식)첨부 조문을 삭제 하였으며,
-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4호서식과 별표1중 광산근로자 관련용어를 삭제 하였음.

○ 입주자 선정(공모)절차 신설 (제3조)

- 입주자 선정시 입주신청서 접수일 1개월 전에 군민들이 주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하고 (아파트 소재지, 동별 및 호수, 입주 부담금, 기타 필요한 사항)
- 입주 신청자가 임대 예정호수를 초과 할 때에는 ①광산 근로자 재직 경력 세대주 ②무주택 세대주 순에 의하여 선정하며,
- 상기 순위에서 경합 될 때에는 ①광산 근로자로 재직한 경력이 오래된 자 ②국가 유공자 ③부모 봉양자 ④기타 군수가 입주가 타당 하다고 인정 되는자 순으로 결정함.

정선군고시 제2008-73호

농어촌도로기본계획(변경)의 고시

읍면	도로의 종 류	노선명	노 선 번 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 요 경과지	(변경) 고시사유
				기 점	종 점	당초	변경		
정선읍	리도	덕이선	201호	정선읍 덕송리 627-3	정선읍 덕송리 257	3.0	-	덕송리	폐지
고한읍	리도	만구선	204호	고한읍 고한리 산216-33	고한읍 고한리 산216-1	2.5	3.0	만항재	위치변경 (노선연장)
사북읍	리도	골화선	201호	사북읍 사북리 421-2	사북읍 사북리 산155-3	5.5	4.5	화절령	노선축소
임계면	리도	송뫼선	205호	임계면 송계리 3	임계면 송계리 746	1.5	-	송계리	폐지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6조제5항(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도로의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8. 07. 31.

정 선 군 수

주 : 1. 기점, 종점란에는 지번을 기입

정선군고시 제2008-7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 08. 01.

정 선 군 수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km) (금회연장)	주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 고
도로	군도	군도2호선 (조동~북실)	시점 : 정선읍 북실리 종점 : 정선읍 북실리	L=34.4km (L=1.9km)	정선읍 북실리	도로확·포장	
도로	군도	군도4호선 (선평~가수)	시점 : 남 면 광덕리 종점 : 정선읍 가수리	L=12.0km (L=2.29km)	정선읍 가수리	도로확·포장	
도로	군도	군도9호선 (유평~구절)	시점 : 동 면 화암리 종점 : 동 면 북동리	L=58.3km (L=1.52km)	동 면 북동리	도로확·포장	
도로	군도	군도9호선 (유평~구절)	시점 : 북 면 유천리 종점 : 북 면 구절리	L=58.3km (L=4.0km)	북 면 구절리	수해복구	

2.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3. 사업시행기간 : 2008. 08 ~ 2012. 12

4. 설계도서 및 자금계획등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 장 소 : 정선군청 건설도시과(☎033-560-248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등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붙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노선명 : 군도2호(조동~북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1	정선읍 북실리	622-15	전	9	9	국	정선군				
2	"	623-5	전	2,927	686	국	정선군				
3	"	623-6	전	2,927	215	국	정선군				
4	"	700-1	전	3,878	48	김수연	정선읍 북실리 700				
5	"	624-5	전	1,481	395	전주택	정선읍 북실리 245				
6	"	산3-18	임	155,938	486	제주고씨화 전군파정선 동문화	정선읍 봉양리 359-1				
7	"	산3-21	임	10,711	1,511	제주고씨화 전군파정선 동문화	정선읍 봉양리 359-1				
8	"	산3-19	임	7,934	276	제주고씨화 전군파정선 동문화	정선읍 봉양리 359-1				
9	"	산3-20	임	722,381	443	전주택	정선읍 북실리245				
10	"	699-8	전	125	117	전창기	정선읍 북실리207				
11	"	699-12	전	243	48	정선군					
12	"	699-11	전	626	10	안기수	정선읍 북실리651				
13	"	696-8	전	668	439	정선군					
14	"	696-6	전	8,079	38	정선군					
15	"	694-1	전	5,322	46	정선군					
16	"	693-4	전	8,668	49	정선군					
17	"	692-5	전	259	78	정선군					
18	"	678-10	전	397	270	신기선	정선읍 북실리155				
19	"	682-7	전	152	43	정선군					
20	"	673-1	전	9,306	1,355	정선군					
21	"	671-3	전	839	232	정선군					
22	"	산5-3	임	7,934	567	김나연외1	서울 강남구 암구정동 486한양아파트43동205호				
23	"	686-5	전	6,016	1,315	정선군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24	정선읍 북실리	687-1	전	3,269	267	정선군					
25	"	560-1	전	5,002	1,201	정선군					
26	"	559-1	전	2,440	497	전창기	정선읍 북실리 207				
27	"	558-1	전	2,298	716	정선군					
28	"	557-2	전	148	148	정선군					
29	"	557-3	전	1,524	749	정선군					
30	"	산11-1	임	722,381	303	동명임업 주식회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44				
31	"	551-1	전	2,426	1,989	정선군					
32	"	550-1	전	5,154	193	정선군					
33	"	530-1	전	2,565	140	정선군					
34	"	531-3	전	9,795	2,248	정선군					
35	"	532	전	149	149	정선군					
36	"	533	임	248	248	임종수	정선읍 북실리 33				
37	"	495-1	임	625	512	정선군					
38	"	산43-1	임	57,521	288	정선군					
39	"	산43-2	임	57,521	443	정선군					

○ 노선명 : 군도4호(선평~가수)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1	정선읍 가수리	193	학	6,134	903	국	강원도(교육감)				
2	"	54-4	전	1,630	142	강릉유씨	영월군 영월읍 흥월리 105				
3	"	55	대	238	3	유대영	정선읍 가수리 54-2				
4	"	54-2	대	386	158	유대영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54-2				
5	"	54-5	창	994	204	유대영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54-2				
6	"	54-7	전	442	370	유대영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54-2				
7	"	54-1	전	830	10	유순상 외 1인	정선군 정선읍 굴암리 56				
8	"	59-4	전	1,064	484	유인환	동해시 북평동 151-5 북평주공2차 아파트 205-507				
9	"	59-3	전	628	156	유종열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44-4				
10	"	60	대	473	113	유종열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44-4				
11	"	61	대	208	115	김시복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61				
12	"	79-1	도	3,530	683	국	건설부				
13	"	62	전	1,526	101	유영희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78				
14	"	77	전	2,235	80	유영희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78				
15	"	40-2	답	1,798	791	전제홍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38				
16	"	38-2	답	298	22	최승수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52				
17	"	38-1	전	4,443	37	최승수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52				
18	"	36	전	2,896	1,177	유종열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79-4				
19	"	31-4	답	255	61	국	재무부				
20	"	32	답	744	567	전제도	평창군 평창읍 이곡리 370				
21	"	191	전	783	245	국	환경부				
22	"	53	전	1,924	603	국	환경부				
23	"	52	대	575	255	국	환경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24	정선읍 가수리	51-3	전	371	34	국	정선군				
25	"	51-2	전	875	25	유한중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56				
26	"	51-1	전	1,398	12	유한중 외 2인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56				
27	"	49	대	416	38	유순상 외 1인	정선군 정선읍 굴암리 56				
28	"	48-2	대	413	63	유대영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360				
29	"	48-1	전	2,618	93	유대영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360				
30	"	47	전	426	112	전광택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38				
31	"	46-1	대	324	156	전광택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38				
32	"	45	전	2,906	402	국	환경부				
33	"	44	대	694	443	국	환경부				
34	"	40-3	전	1,438	450	전제홍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38				
35	"	37	대	327	313	유종열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79-4				
36	"	산366	천	256,554	6,524	국	건설교통부				
37	"	35	답	863	52	전순례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56				
38		34	답	734	84	전광택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38				
39		12-1	구	1,966	350	국	농수산부				
40		33	답	820	709	유대영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360				
41		30-2	답	860	236	유광열	정선군 북면 여량 리 320 성도아파트 401				
42		산61	임	176,529	24	박양기외1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77-13				
43		산59	임	115,041	2,208	국	정선군				
44		13	답	1,071	559	이영재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359				
45		13-1	도	2,361	23	국	건설부				
46		3-1	도		427	미등기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47	정선읍 가수리	3	전	6,575	2,076	이영근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47				
48	"	산58	임	4,193,751	1,282	국	산림청				
49	"	30-1	답	1,021	504	유광열	정선군 북면 여량 리 320 성도아파트 401				
50	"	28	답	783	451	전광택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38				
51	"	27	답	641	379	전인소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69				
52	"	24	답	1,183	628	국	환경부				
53	"	23	답	1,250	649	국	환경부				
54	"	20	답	1,388	765	유창길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49				
55	"	19	답	1,491	801	이강호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359				
56	"	16	답	1,385	775	유춘자 외 8인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209				
57	"	15	답	1,388	525	강릉유씨군수공 파용자증자증증 회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360				
58	"	11	전	1,140	744	강릉유씨군수공 파용자증자증증 회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360				
59	"	12	대	655	43	구명희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45 한국아파트 101-502				
60	"	12-2	전	479	224	구명희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45 한국아파트 101-502				
61		4	전	3,554	999	유성열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616-3				
62		9	전	1,160	714	국	재무부				
63		1-1	도	3,926	977	국	건설부				
64		5	전	2,777	27	국	환경부				
65		8	임	1,035	117	국	재무부				
66		산30	임	6,149	3	유남식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267				
67		산32	임	2,380	300	오경환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319-30				
68		10	임	5,511	373	국	재무부				
69		7	전	3,930	1,066	유상식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56				

[illegible]

○ 노선명 : 군도9호(유평~구절) - 동면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1	동화암리	583	임야	14,529	2,692	황명엽	대구시 남구 대명동 1468-11				
2	"	산267	임야	3,105	392	배순자	고한읍 고한리 62-17				
3	"	산 267-1	임야	377	239	국	정선군				
4	"	산266	임야	3,658	944	김윤배	정선읍 덕송리 420				
5	"	산265	임야	19,438	140	윤지혜	서울 강서구 화곡동 370-82				
6	"	산 266-2	임야	2,028	1,153	김윤배	정선읍 덕송리 420				
7	"	산 266-1	임야	1,719	1,683	김윤배	정선읍 덕송리 420				
8	"	산 266-3	임야	1,521	144	김윤배	정선읍 덕송리 420				
9	"	584	전	2,283	848	문종철	북동리 1212				
10	"	산 260-1	도로	2,877	74	국	건설교통부				
11	"	산268	임야	5,325	699	배순자	고한읍 고한리 62-17				
12	"	산 268-1	도로	2,562	1,671	국	정선군				
13	"	산 268-2	임야	2,030	222	배순자	고한읍 고한리 62-17				
14	"	585-1	도로	785	502	국	정선군				
15	"	585	임야	3,185	87	곽영미	서울양천구신정동311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021-503				
16	"	578-2	임야	3,850	34	국	건설교통부				
17	"	586-1	도로	697	357	국	건설교통부				
18	"	산 269-1	도로	1,256	910	김송락	서울시중구신당동 160-13				
19	"	산 269-2	임야	482	73	전장수	평창군대화면래화리 1846				
20	북동리	산159	임야	1,914	121	국	산림청				
21	"	산 160-1	도로	169	169	권영숙	용인시처인구모현면왕 산리789-15				
22	"	산 159-1	도로	324	324	국	산림청				
23	"	산 159-2	도로	43	43	국	산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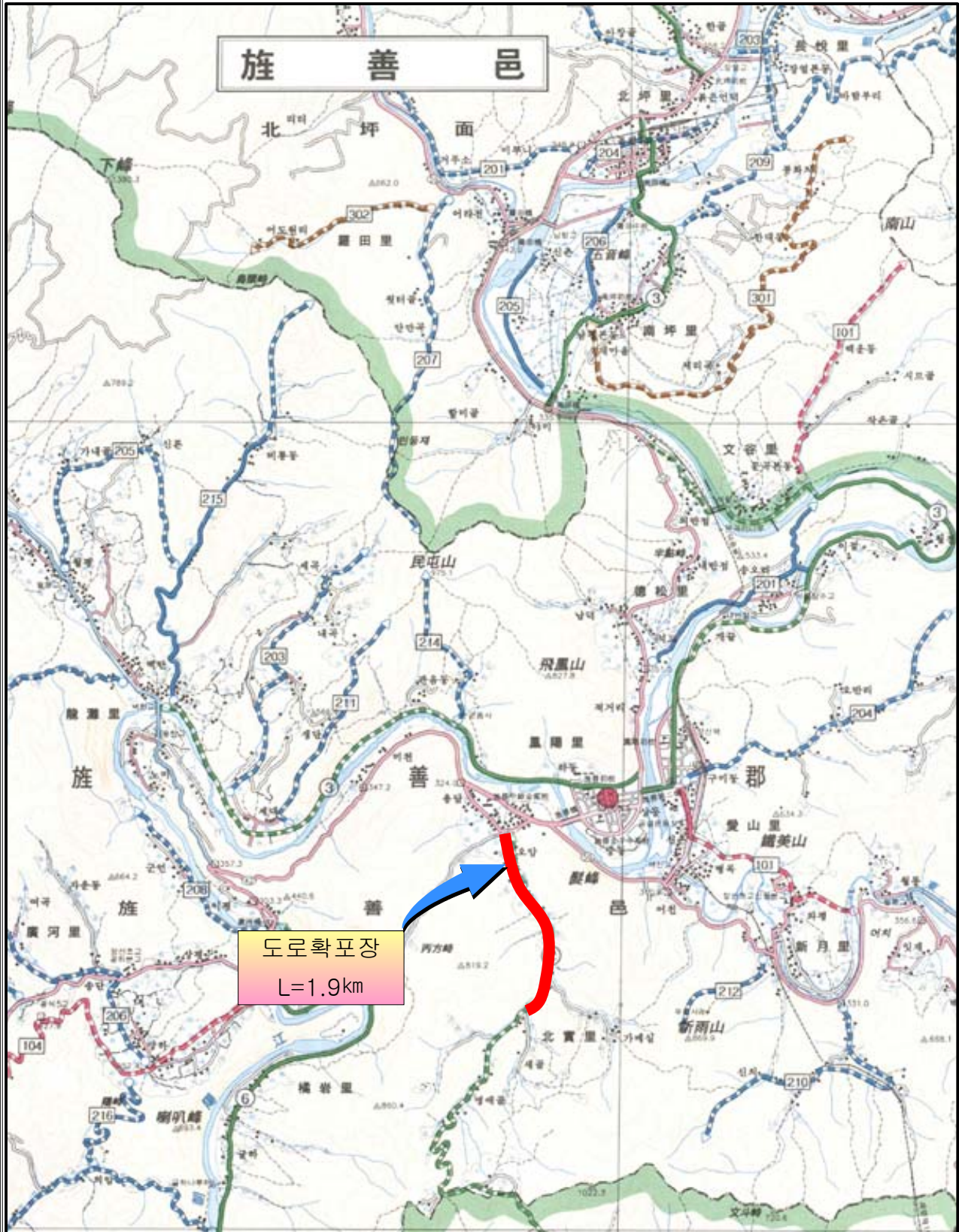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24	동면북동리	109	임야	1,441	534	국	재무부				
25	"	108-6	도로	178	178	국	정선군				
26	"	산 158-1	도로	171	171	국	건설교통부				
27	"	산 158-2	도로	521	228	국	정선군				
28	"	107-1	도로	9,234	4,850	국	정선군				
29	"	108-5	도로	1,109	485	국	정선군				
30	"	95-1	도로	1,029	533	국	건설교통부				
31	"	108	임야	2,284	541	윤창옥	동면북동리128				
32	"	108-4	도로	1,004	636	국	정선군				
33	"	산 144-1	도로	2,430	1,230	국	정선군				
34	"	산144	임야	179,408	1,028	장국지외2 인	동면북동리62				
35	"	107	임야	2,047	257	인동장씨문 준회	동면북동리247				
36	"	108-7	도로	1,009	269	국	정선군				
37	"	106	임야	8,319	408	엄성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55				
38		107-2	임야	702	547	국	정선군				
39		106-1	임야	203	203	국	정선군				
40		94-1	전	2,272	1,140	국	정선군				
41		94	전	4,215	673	인동장씨문 준회	동면북동리247				
42		104	전	6,000	346	박재영	정선읍 애산리 415-72				
43		95-3	도로	194	194	국	건설교통부				
44		95-2	전	601	601	국	정선군				
45		102	전	3,052	447	장철지	북동리 65-2				
46		102-1	전	426	226	국	정선군				
47		95-4	도로	272	43	국	선설교통부				

○ 노선명 : 군도9호(유평~구절) - 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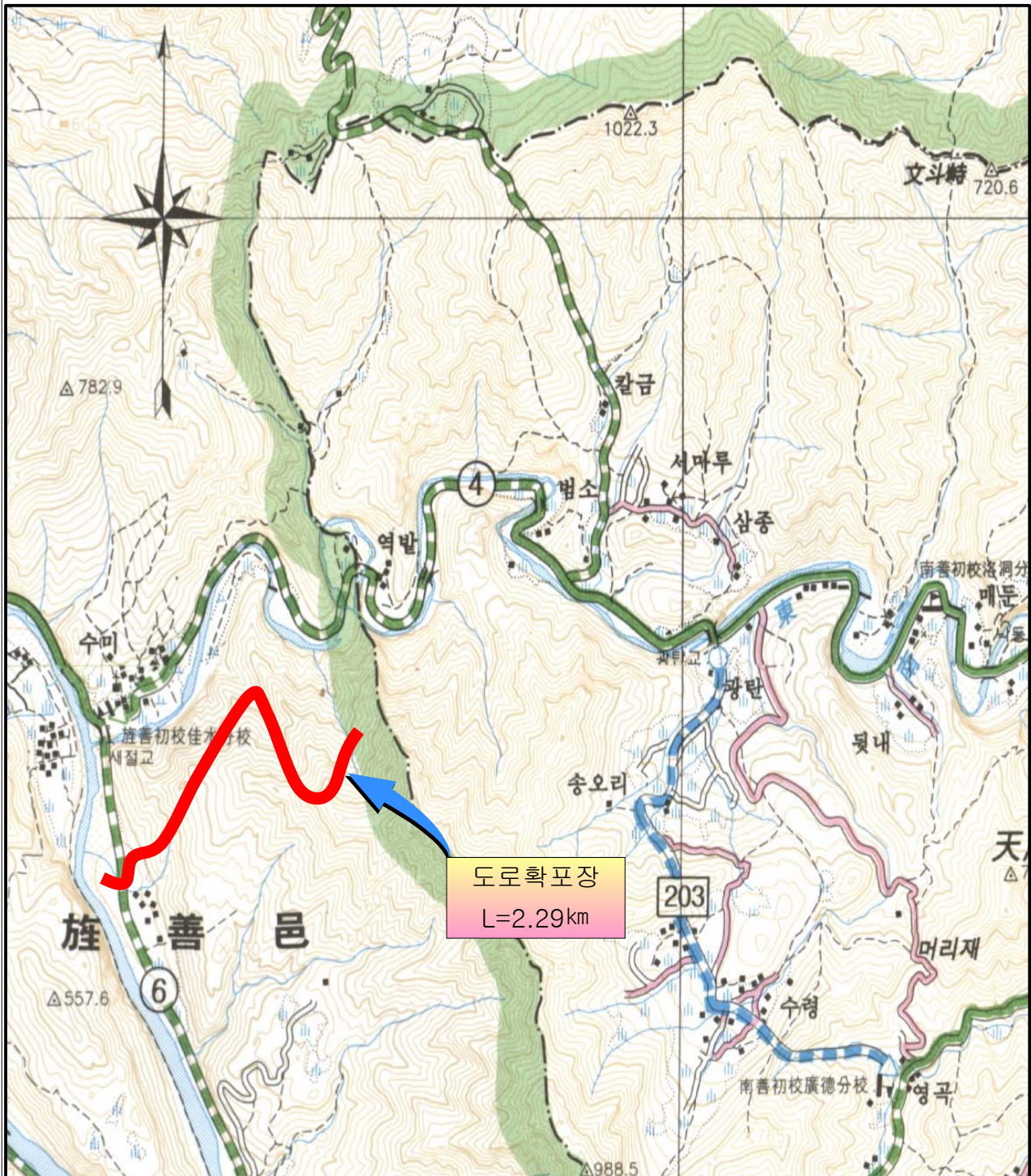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1	북면 구절리	340-2	도	416	416	산림청	국				
2	"	341-2	도	228	228	산림청	국				
3	"	343-2	도	1,094	1,094	산림청	국				
4	"	344-2	도	374	374	산림청	국				
5	"	347-2	도	463	463	산림청	국				
6	"	361-3	도	836	836	산림청	국				
7	"	363-2	도	301	301	산림청	국				
8	"	365-2	도	145	145	산림청	국				
9	"	366-2	도	198	198	산림청	국				
10	"	367-4	도	301	301	산림청	국				
11	"	373-2	도	1,471	1,471	산림청	국				
12	"	산61-2	도	1,091	1,091	산림청	국				
13	"	산62-2	도	1,190	1,190	산림청	국				
14	"	산2-21	임	1,340	1,340	산림청	국				
15	"	산2-22	임	5,225	5,225	산림청	국				
16	"	산2-24	임	1,294	1,294	산림청	국				
17	"	산52-2	도	4,562	4,562	산림청	국				
18	북면 유천리	723-2	도	860	860	산림청	국				
19	"	730-2	도	631	631	산림청	국				
20	"	733-2	도	1,283	1,283	산림청	국				
21	"	738-2	도	420	420	산림청	국				
22	"	740-2	도	443	443	산림청	국				
23	"	742-2	도	1,511	1,511	산림청	국				

8. 위 치 도

○ 공사명 : 군도2호(조동~북실)도로확·포장공사



○ 공사명 : 군도4호(선평~가수)도로확포장공사



○ 공사명 : 군도9호(북동재)도로확포장공사



○ 공사명 : 군도9호(자개지구)도로수해복구공사



정선군고시 제2008-79호

하천 점용·사용 허가고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08월 12일

정 선 군 수

시행 (점용· 사용) 자	상호 및 명칭	정선군		
	대 표 자	정선군수 (농업정책과)	주 소	정선군 · 읍 봉양리 267번지
하 천 명		지장천(지방 2급)		
공사 (점용· 사용) 개요	위 치	정선군 남면 낙동리 687번지(538-3번지선)		
	허가량	A = 5,370 m ² V = 5,160 m ³	폐천부지 예상면적	□□없음□□
	기 간	2008년 08월 12일 ~ 2008년 12월 10일		
	목 적 및 사 유	농촌 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하천점용 및 토석채취		

정선군공고 제2008-463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08년 6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토지의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 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기간을 운영하오니 주택소유자께서는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재무과 및 읍·면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08. 07.

정 선 군 수

○ 열 랐

- 기 간 : 2008년 8월 7일 ~ 8월 27일
- 장 소 :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 열람대상 : 정선읍 봉양리 1-62번지 외 154호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07년 8월 7일 ~ 8월 27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 제출방법 :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정선군공고 제2008-464호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 08. 05.

정 선 군 수

1. 제정취지

2008. 7. 1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정선군노인요양원을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치매 및 중증환자가 요양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삭제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에 따라 치매 및 중증환자에 대한 요양 및 편의제공을 요양원의 업무 및 기능으로 함(안 제4조)

나. 65세 이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만 입소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시설입소 대상자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 하여 입소한 경우 65세 미만의 배우자도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시설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청구, 수납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

라. 입소자중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한 경우 퇴소시킬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입소한 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더라도 퇴소조치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가. 지원금액의 확정적 명시(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우편 또는 Fax 가능)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과 고령화정책담당 (우편번호 233-804)
- FAX 제출 : 033-560-2588
- 문의전화 : 033-560-2971

붙임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노인성질환(치매 및 중증환자 제외)”을 “노인성질환”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65세이상의 자로서 노인성질환(치매 및 중증환자 제외)”을 “65세 이상 또는 65세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한 자의 배우자”로 한다.

1. 65세이상의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또는 그 부양의 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시설급여 수급대상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급여비용 등의 수납 등) 요양원 입소자의 시설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청구·수납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입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정선군노인요양원에 입소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입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사유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사유	비 고
업무 및 기능 (제4조)	-치매 및 중증환자를 제외한 노인성 질환의 요양 등 편의제공	-치매 및 중증환자 포함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에 치매, 뇌혈관성 질환자 포함(노인성 질환외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는 장기요양 대상에서 제외)	법 제2조
입소대상 (제5조)	-65세이상자중 노인성질환(치매, 중증환자 제외)자 중 기초생활포장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시설급여 수급자 포함 (배우자 제외)	65세 미만, 치매환자 등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를 입소대상자에 포함	법 제35조
입소비용 (제7조)	- 입 소 대 상 자 로 부 터 당월 입소비용 및 입소보증금을 미리 수납토록 함 - 입소비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수납토록 함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지급 받도록 함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금액을 수납토록 함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름	법 제38조
입소비용등 감면 (제8조)	-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수급자에 대하여는 입소비용 및 보증금을 감면할 수 있음	-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감면은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함 (안 제7조에 포함)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의 납부, 감면에 관한 사항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음	제40조
퇴소 (제10조)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할 경우 퇴소토록 할 수 있음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는 제외토록 함	노인 장기요양대상자인정은 부양능력과 관계없음	제2조제2호

관 계 법 령 발 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5조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장기요양기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명세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식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①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설립비용을 지원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본인일부부담금) ①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②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선군공고 제2008-4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하여 재산압류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 08. 06.

정 선 군 수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08.08.06~ 2008.08.19(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정선군청 세무회계과(033-560-2292)로 연락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법인)	주 소	채납세목	채납액(원)	압류 물건	송달불능 사 유
이정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4 목동신시가지아파트 410동 1304호 (10통4반)	취득세(부동산)	932,480	부동산	폐문부재
최정순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89-1 봉양주공1차아파트 101동 102호(10통1반)	자동차세(자동차)외3	812,000	부동산	수취인부재
임춘근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3392-1(1통)	재산세외13건	916,280	부동산	수취인부재
최종각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60 (8통4반)	재산세외 12건	372,780	부동산	수취인부재
손대원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682-7 (1통1반)	자동차세(자동차)외8건	660,180	부동산	이사감
정재웅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4-5 803호 (36통1반)	취득세(부동산)외1	917,770	부동산	수취인불명
장우영	정선군 북면 구절리 231(1통4반)	재산세(토지)외6건	875,440	부동산	이사감
김경탁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239-1 강릉3차아파트 101호(5통3반)	재산세(토지)외2	443,870	부동산	수취인부재
이창선	경기도 수원시영통구 매탄동 1176-11 102호 (16통4반)	취득세(부동산)	4,007,740	부동산	폐문부재
전재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500(25통6반)	재산세외 10건	408,490	부동산	폐문부재
박승국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두정동 875 탑스빌 305호(35통3반)	재산세외 6건	218,050	부동산	폐문부재
김성진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700 두진아파트 901호(30통1반)	취득세(부동산)외2건	397,440	부동산	수취인부재
이선희	정선군 남면 무릉리 530 무릉주공아파트 103동 407호(1통3반)	자동차세(자동차)외1	590,210	부동산	폐문부재
서대성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6-2(8/5)	자동차세(자동차)외4건	497,300	부동산	폐문부재
전영복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02 사북선명아파트 104동 401호(2통14반)	취득세(부동산)외1	652,730	부동산	폐문부재
강미경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665 현대아파트 104동 1206호(20통7반)	자동차세(자동차)외1	782,360	부동산	수취인부재
강미영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421-1 305호(2통2반)	취득세(부동산)	805,080	부동산	폐문부재
박중미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02 사북선명아파트 101동 306호(2통5반)	자동차세(자동차)외1	510,350	부동산	폐문부재
이순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72-19	재산세(주택)외2	192,570	부동산	주소불명
김윤배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399	재산세(토지)외1	58,860	부동산	이사감
윤명숙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16-7 다세대주택 501호(20통2반)	재산세외 5건	102,850	부동산	이사감
이 철	경기도 용인시 양지리 240 성창그린빌리지 A동 102호(1통3반)	취득세 외 7	286,370	부동산	이사감
장숙희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48-2 (7통2반)	자동차세(자동차)	86,200	부동산	수취인미거주
민정숙	경기도 성남시분당 서현동 91 한양시범아파트332동 1402호	재산세외 1 동차)외4건	124,640	부동산	수취인부재

정선군공고 2008-470호

2009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정제안 모집 공고

2009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공모를 위한 군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자율 사업계획(안)을 공모 및 심사·채택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군민 지정제안 모집을 공고합니다.

2008. 08. 11.

정 선 군 수

1. 제안기관 : 정 선 군

2. 제안의 모집

가. 모집기간 : 2008. 08. 11일 ~ 2008. 09. 10일(30일간)

나. 접수처 : 정선군청 농업정책과(☎ 560-2371, 2376)

3. 제안의 자격과 방법

가. 제안의 자격 : 정선군민

나. 제안의 방법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

4. 제안의 종류 : 지정제안

5. 지정제안 모집내용

가. 사업명 : 2009 향토산업육성사업

나. 사업비(예정) : 1,000백만원

다. 제안에 포함할 내용

○ 정선군 일원의 부존자원을 재배·가공·관광 및 서비스산업으로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① 생약초·옥수수를 활용한 토속주와 결합된 웰빙음식 개발 등 지역성과 차별성 있는 관광상품으로 육성방안

② 기존 특산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와 농·축·임산물의 효능 및 약효를 이용한 신소재 상품개발 등

③ 기타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침 및 기본방향에 적합한 사업

6. 제출서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

○ 제안서 1부

○ 제안내용 설명서 1부

7. 창안자에 대한 시상

○ 우수상(1명) : 시상금 30만원

○ 장려상(2명) : 시상금 10만원

8. 창안의 권리승계

- o 채택된 제안의 특허, 실용신안, 의장출원 및 등록권리와 사용에 관한 권리는 정선군이 승계함

9. 기 타

- o 제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농업정책과 문의

2009 정선군 향토산업육성사업 제안서					접 수 번 호	
					접수일	
제안 내용	제안제목					
	사업개요					
	세 부 사업내용					
	기대효과					
제안자	주 소 (근무부서)				우편번호	
	성 명		주 민 번 호		성 별	
	연락처	H.P :	E-mail		직 업	
본인은 아래와 같이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에 응모합니다. 첨 부 : 1. 제안 설명서 2. 기타 참고자료(세부사업계획서, 설계도, 도안, 사진 등) 2008. . . 제 출 자 : (인) 정선군수 귀하						

세부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 목적 및 필요성

○

○

□ 사업실행주체 :

□ 향토자원 개발지역(위치)

○ 강원도 정선군 ○○면 ○○ 리 ○○번지

□ 향토자원개발 관련 품목 :

□ 사업기간 : 년

□ 주요사업내용 (주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사업량,사업비 등)

○

○

□ 기대효과 :

정선군공고 제2008-471호

도로정비사업시행허가에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 정비사업 시행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08월 12일

정 선 군 수

사업시행자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주 소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
도로의종류	농어촌도로 리도205호	노선명	고한205호(고옹선)
공사의종류	농어촌도로정비(스키장 콘도 증축에 따른 농어촌도로 확 · 포장)		
구 간	기점 : 고한읍 고한리, 종점 : 고한읍 고한리(0.494km)		
공사시행장소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90-1번지 일월		
착 공 예 정 일	2008년 8월 12일	준공예정일	2009년 12월 31일

목적과 사유

(주)강원랜드 리조트 조성사업중 스키장 콘도 증축에 따른 기존 농어촌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통하여 이용객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교통통행 및 안전성 확보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광지의 기본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정선군공고 제2008-472호

정선 군기본계획 승인 사항 열람공고

2020년 정선군 기본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지사로부터 승인되었기 같은 법 제22조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이를 일반에게 열람 하고자 합니다.

2008년 08월 20일

정 선 군 수

1. 공고목적 : 2020년 정선 군기본계획 승인사항 열람
2. 주요내용
 - 목표연도 : 2020년
 - 목표인구 : 65,000명
 - 계획구역 : 1,220.670km²
 - 도시공간구상 : 1대생활권 5중생활권
 - 토지이용계획 변경도서(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3. 열람기간 : 2008. 8.20 ~ 9.18(30일간)
4. 열람장소 :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읍·면 사무소
5. 관계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게제생략)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건설도시과(033-560-2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08-476호

공 시 송 달

성 명 : 전나영 등 94명 (내역별첨)

주소또는거소 :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518 (15/6) 등 94개소

서류의 명칭 : 취득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독촉고지서

서류의 내용 : 2008년 7월 발송 지방세 독촉고지서 반송분

위의 서류를 2008년 7월중 귀하에게 우편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사무소 등이 불분명하므로 독촉납기를 2008년 9월 10일로 변경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여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 합니다.

2008년 8월 14일

정 선 군 수

세 목	현주소	납세자명	과세물건	세액합계	공고사유
취득세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518 교현 아파트 10동 405호 (15통6반)	전나영	토지 동면 호촌리 8번지 8717.0000㎡ 상속	892,510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02 사북선명아파트 103동 1506호	이종화	사북리369-2번지(2002.04.29부터 2005.10.04까지)4년분	6,180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20(6반)	박순녀	덕천리434번지선 대지456, 전1,034	12,360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635-2	주원개발	용산리106번지(기간연장)	12,360	수취인미거주
주인세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822-2	주식회사 강원 하이테크	2007년 귀속 법인세(주식회사강원하이테크)	164,680	이사감
주인세	강원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산 209-1	대광건설	2007년 귀속 법인세(주)대광건설	3,384,24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702-1 (6통4반)	김계순	임계면 송계리 702-1(2007년분) 도감사지적-4층이상건물	19,23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702-1 (6통4반)	우병기	임계면 송계리720-5(2005년분) 도지적사항-4층이상건물	2,89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94-3 골드빠세텔 1005호 (9통6반)	황정연	동면 화암리 산 231 (2007년분)	18,88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59-75 대림4 차아파트 802호 (16통4반)	이옥윤	남면 무릉리 640-12 2동 2호 (면적 49.2㎡)(2007년분)	3,00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59-75 대림4차아파트 802호 (16통4반)	이옥윤	남면 무릉리 640-12 2동 2호 (면적 49.2㎡)(2006년분)	2,75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293 (1반)	민경자	05두5106(비영업용,배기량:1599) [경감율:5%]	142,350	이사감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49-1 (3통9반)	윤제영	15우6109(비영업용,배기량:1998)	267,52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293 (1반)	민경자	42나4247(비영업용,배기량:1991) [경감율:10%]	239,920	이사감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46-6 미소빌아파트 814호 (5통8반)	양희선	51모1749(비영업용,배기량:1498) [경감율:15%]	119,330	이사감
자동차세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좌리 263 (1통)	유경수	51모2188(비영업용,배기량:2493) [경감율:10%]	330,46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좌리 263 (1통)	유경수	93어1511(비영업용,적재정량:1000)	27,88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293 (1반)	서재웅	93어2085(비영업용,적재정량:1000)	24,190	이사감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202-2 (2통4반)	윤복란	93어2206(비영업용,적재정량:400)	27,88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좌리 263 (1통)	유경수	강원28노2077(비영업용,배기량:3497)[경감율:20%]	412,03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45-1 현대아파트 101동 708호 (5통4반)	김경화	강원70노1767(비영업용,배기량:2607,승차정원:9)[경감율:40%]	154,34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325-1	한국시각 장 애 인 연 합 회 정선지회	강원70노2872(비영업용,승차정원:12,2008.01.01~2008.12.31)	63,600	이사감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90-2 (주)강원랜드사원숙소 B동 620호 (16통2반)	박주연	03소9601(비영업용,배기량:1599) [경감율:5%]	142,35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90-2 (주)강원랜드사원숙소 C동 626호 (16통3반)	김윤지	05마3390(비영업용,배기량:1798) [경감율:5%]	228,70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6-2 (13통3반)	김영순	06너6407(비영업용,배기량:2476,승차정원:7)[경감율:35%]	158,800	이사감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5-14 강원랜드다목적숙소(기숙사) 가동 505호 (8통12반)	김상일	06버1872(비영업용,배기량:2972) [경감율:50%]	218,86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2-86 (10통3반)	신덕임	41나9707(비영업용,배기량:2874) [경감율:10%]	380,96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90-2 (주)강원랜드사원숙소 A동 308호 (16통1반)	이경태	51노4015(비영업용,배기량:2349) [경감율:10%]	311,37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73-16 (5통2반)	박영덕	53주1102(비영업용,배기량:2476) [경감율:50%]	173,310	이사감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73-16 (5통2반)	박영덕	99고5523(비영업용,적재정량:17000)	81,110	이사감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6-2 (13통3반)	이재록	강원27너8576(비영업용, 배기량:1468)[경감율:50%]	68,79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88-22	천지종합 건설	강원27노2476(비영업용, 배기량:1997)[경감율:50%]	133,68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관촌리 125 (37통)	윤성욱	강원27노7103(비영업용, 배기량:1323)[경감율:35%]	80,58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17 (4통7반)	서천수	강원27노7142(비영업용, 배기량:1997,2008.01.01-2008.06.30)	173,79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2-296	신흥	강원80노3547(비영업용, 적재정량:1000)	27,88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38-4 (13통5반)	남용우	강원80노4407(비영업용, 적재정량:850)	27,88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관촌리 125 (37통)	윤성욱	강원8라2167(비영업용, 적재정량:1000)	27,88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35-5 주공사북아파트 206동 502호 (6통10반)	신동수	02주1912(비영업용, 배기량:1997)[경감율:25%]	200,53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34 (12통5반)	이상록	03마6055(비영업용,배기량:1991, 승차정원:7)	178,600	이사감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7-70 (7통5반)	이만석	05서8359(비영업용,배기량:2476, 승차정원:7)[경감율:30%]	171,010	이사감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35-1 주공사북아파트 2동 107호 (6통2반)	송봉순	51노1071(비영업용,배기량:796)[경감율:40%,45%]	46,66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3-5	나무와나 무	51모2597(비영업용,배기량:3199) [경감율:10%]	424,06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229-3 영동(아)4-405호	정선도시 개발	51모2837(비영업용,배기량:2874, 승차정원:7)[경감율:25%]	212,690	이사감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6-52	진영건설	53러1813(비영업용,배기량:2497) [경감율:45%]	202,250	이사감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73-25 고한아파트 301호 (5통4반)	원우현	56서1992(비영업용,배기량:2972) [경감율:20%]	350,170	이사감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8-14 (3통6반)	민수남	64조6035(비영업용,배기량:1399)	114,63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735 (3통7반)	최웅재	67라8075(비영업용,배기량:1591)	149,12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35-5 주공사북아파트 202동 205호 (6통6반)	안대현	77다7454(비영업용,배기량:2902, 승차정원:9)[경감율:40%]	171,80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4-74 (10통2반)	탁성원	86주7399(비영업용,적재정량:1000)	21,14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7-70 (7통5반)	이만석	93마9265(비영업용,적재정량:7000)	67,200	이사감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82 대림아파트 가동 303호 (1통14반)	장금식	강원28거1232(비영업용,배기량:1799)[경감율:50%]	120,42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35-5 주공사북아파트 06동 303호 (6통10반)	정순섭	강원28노1091(비영업용,배기량:2299)[경감율:25%]	253,93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94-14 사북선명오피스텔 1021호 (9통4반)	김정현	강원28라9772(비영업용, 배기량:2972)[경감율:30%]	306,400	이사감
자동차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380-5 (3통2반)	서영덕	강원3마1350(비영업용, 배기량:2238)[경감율:50%]	164,80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229-3 영동(아)4-405호	정선도시 개발	강원70노3073(비영업용, 승차정원:12)	63,600	이사감
자동차세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73-40 (3통3반)	박영동	강원80고3894(비영업용, 적재정량:400)	27,88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6-52	진영건설	강원80노5479(비영업용, 적재정량:1000)	27,880	이사감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199-7 (6통2반)	신정웅	45무5638(비영업용, 배기량:1998,승차정원:7)	179,220	이사감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6-6 (7통1반)	윤요호	50서2605(비영업용,배기량:1991) [경감율:10%]	239,920	이사감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166 함백주공아파트 2동 402호 (6통5반)	이계월	50우6462(비영업용,배기량:1495) [경감율:50%]	70,040	이사감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840 (2통4반)	권기현	77마4224(비영업용,배기량:2238, 승차정원:9)[경감율:50%]	110,42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199-5 (5통2반)	양금선	강원27노3748(비영업용, 배기량:1998)[경감율:45%]	147,120	이사감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111 (1통4반)	전숙희	강원28머4973(비영업용, 배기량:1341)[경감율:30%]	87,97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198-4 (5통2반)	박병연	강원32나4807(비영업용, 배기량:1323)[경감율:50%]	117,780	이사감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6/80	(명)대성 주류	강원7마2707(비영업용, 적재정량:4500)	77,78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산 87-1 (5통4반)	임영식	강원80노1487(비영업용, 적재정량:800)	27,880	이사감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산 87-79 (2통3반)	이종우	강원80노2002(비영업용, 적재정량:4500)	77,780	이사감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401 (5반)	진영래	강원80다9750(비영업용, 적재정량:1000)	27,880	이사감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401 (5반)	진영래	강원80두1688(비영업용, 적재정량:1000)	27,880	이사감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401 (5반)	진영래	강원80라2774(비영업용, 적재정량:2500)	46,960	이사감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892-72 (7통3반)	박명화	강원8마9234(비영업용, 적재정량:550)	27,880	이사감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사북리 402-11	미성	95로3190(비영업용,적재정량:600)	27,88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590-1 아파트 5동 508호 (5통7반)	김경	강원1누2602(비영업용, 배기량:1323)[경감율:50%]	117,78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94-4 (6통3반)	고옥자	강원27노3464(비영업용, 배기량:1495)[경감율:50%]	70,04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590-1 아파트 5동 508호 (5통7반)	이만식	강원27노9239(비영업용,배기량: 2476,승차정원:7)[경감율:35%]	158,800	이사감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590-1 아파트 6동 406호 (5통8반)	안태복	강원28노2573(비영업용,배기량: 2874,승차정원:7)[경감율:20%]	226,88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북면 봉정리 426 (4반)	함원식	51모3191(비영업용,배기량:1997, 승차정원:7)[경감율:40%]	107,470	이사감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북면 유천리224-4	조한정선 대리석	강원80노5470(비영업용, 적재정량:4500)	77,780	이사감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북면 유천리224-4	조한정선 대리석	강원80노5883(비영업용, 적재정량:400)	27,880	이사감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568-1 (1통2반)	변영균	강원28노4080(비영업용, 배기량:1323)[경감율:50%]	117,780	이사감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139-1 (1통3반)	이재호	09루6284(비영업용, 배기량:1991)[경감율:10%]	239,92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139-1 (1통3반)	이재호	93서1117(비영업용, 적재정량:1000)	27,88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58-2 (2통3반)	서임석	강원27노6940(비영업용, 배기량:2874)[경감율:50%]	211,65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58-2 (2통3반)	서임석	강원80노3525(비영업용, 적재정량:1000)	27,88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61 (8통5반)	이은영	강원8나7298(비영업용, 적재정량:1000)	27,880	이사감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71 (1통1반)	신승영	강원80노3769(비영업용, 적재정량:5000)	30,19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소리 628-1 아리랑아파트 3동 404호 (3통7반)	유원석	03마6692(비영업용, 배기량:2656)	271,47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1-4 (5통3반)	심재업	강원80노1880(비영업용, 적재정량:1000)	10,25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410-2 (1통5반)	최한근	97루8956(비영업용, 적재정량:850)	11,46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827/2	수강산업 합자회사	강원70가2828(비영업용, 승차정원:12)	25,23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북면 유천리 212 (2통3반)	남진영	강원31다4914(비영업용, 배기량:1997)[경감율:35%]	19,82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북면 유천리 212 (2통3반)	남진영	강원31다4914(비영업용, 배기량:1997)2004년1기분자동차세(강원도감사추징)[경감율:40%]	160,42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북면 유천리 212 (2통3반)	남진영	강원31다4914(비영업용, 배기량:1997)2004년2기분자동차세(강원도감사추징)[경감율:40%]	160,42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충청북도 제천시 명동 5-4 (1통1반)	박문수	강원14고6103(영업용, 적재정량:16000)	53,810	수취인미거주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공고 제2008-1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신청 공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로금 등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1일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위원장

=====

1. 신청기간 : 2008. 9. 1 ~ 2010. 6. 1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지급 대상 및 신청인의 자격

☐ 지급 대상

☐ 희생자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 행방불명된 사람(이하 ‘행방불명자’),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이하 ‘부상자’) {법 제2조 제1호}

☐ 생환자중 생존자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중 생존자 {법 제2조 제2호, 제6조}

☐ 미수금 피해자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 {법 제2조 제3호}

☐ 신청인의 자격

- ☐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
- ☐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 생환자중 생존자 본인
- ☐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위로금 등 지급 제외(법 제7조)

- 강제동원희생자, 강제동원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경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
-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

3. 신청서 접수

□ 접수장소

- 각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

※ 정선군은 자치행정과에서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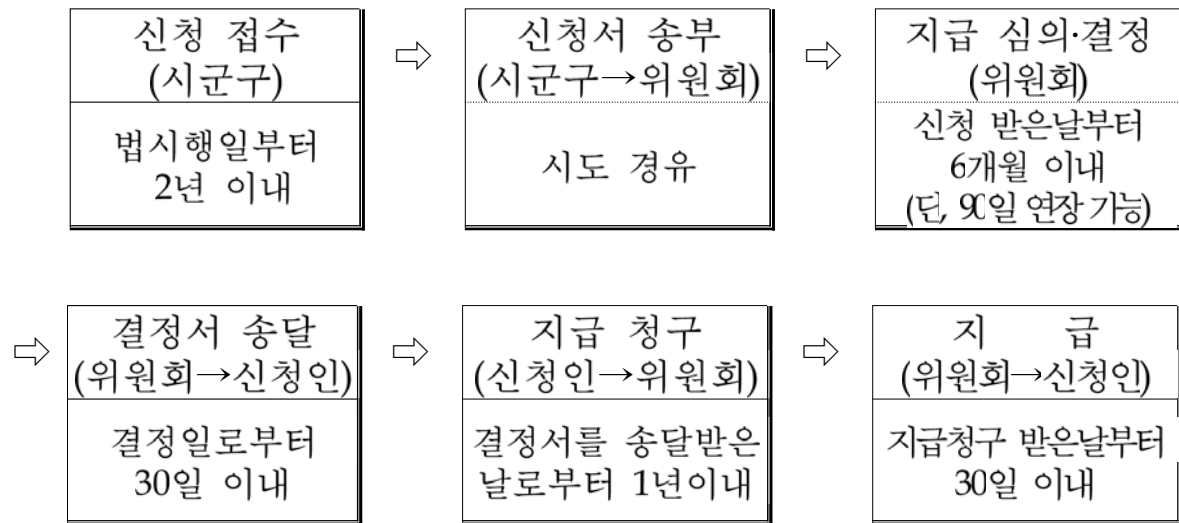
□ 제출방법

- 신청인이 시·군·구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

4. 지급대상별 구비 서류

지급대상별	지원종류	구 비 서 류
■ 공 통		①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본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유족대표자 선정서(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으로서 유족대표자 선정시) 1부 ③다수 신청인 서명서(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으로 유족대표자 선정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1부 ④위로금 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대리인 선정시) 1부
■ 사 망 자 ■ 행방불명자	위로금	①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1부 ②강제동원희생자 제적 등본 1부 ③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부 상 자	위로금	①위로금 지급신청서(부상자용) 1부 ②강제동원희생자 제적 등본(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1부 ③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생환자중 생 존 자	의 료 지원금	①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②강제동원 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미 수 금 피 해 자	미수금 지원금	①미수금피해자 미수금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②미수금피해자 제적등본(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1부 ③미수금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5. 심의·결정 절차



6. 위로금등 산정기준

구 분	지급 대상	산정 기준
위 로 금 (법 제4조, 영 제3조)	사 망 자 행방불명자	1인당 2천만원 *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전(사망자 30만원) 수령자는 234만원 제외
	부 상 자	1인당 2천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최고 2천만원에서 최저 3백만원 * 자세한 금액 산정은 법시행령 별표1~3 참조
미 수 금 지 원 금 (법 제5조)	미수금피해자	- 미수금 당시 1엔 → 대한민국 통화 200원으로 환산 - 미수금이 100엔 이하인 경우 100엔 적용
의 료 지 원 금 (법 제6조, 영 제4조)	생 환 자 중 생 존 자	- 치료 또는 보조 장구 구입에 필요한 경비 1인당 연 80만원 * 지급신청일이 속하는 해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해까지 매년 지급

7. 기타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 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법 제27조)
- 신청은 본인 또는 유족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고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한함(필요한 서식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므로 차순위자가 신청하

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법 제3조)

－ 유족범위 및 순위 : ①배우자 및 자녀－ ②부모－ ③손자녀－④형제자매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피해신고를 하여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다시 위로금 등 지급 신청을 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미수금 피해자의 경우에는 미수금 여부에 대하여 접수장소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서식은 각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또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www.gangje.go.kr),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홈페이지(9.1부터 개통예정), 각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공고란)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

8. 문의처

- 각 시·도 및 시·군·구 (정선군 자치행정과 ☎ 560-2134)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사무국 (☎ 02-2180~2613~8)